

국내 L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사고 해결을 위한 한살림 긴급 토론회

뚝려 버린 정부 LMO 검역과 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

2023년 4월 19일(수) 10시
한살림연합 교육장 '모심' (온라인 병행)

 한살림연합

토론회 순서

시간	주요 내용	담당
10:00~10:05	- 상임대표 인사	
10:05~10:10	- 발제자·토론자 소개, 토론회 운영방식 안내	
10:10~10:20	- 국내 L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 경과 - 한살림 피해 현황 보고(주키니호박 및 가공식품 검출)	박제선 (연합 미래기획본부장)
10:20~11:00	- 국내 L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를 둘러싼 LMO 관련 정부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	송기호 변호사
11:00~11:10	- LMO주키니호박종자 유통 피해 생산자 발언	송용식 생산자
11:10~11:20	- (가제)LMO 사고에 대한 조합원 목소리 확인, 조합원들이 바라는 사고해결 방법과 대책	강말숙 (한살림동서울 이사장)
11:20~11:30	- (가제)한살림 물품사업 관여 조합원들이 바라보는 LMO 사고에 대한 고민과 대책	우준 (연합 농산물위원장) <i>*온라인 참여</i>
11:30~11:40	- 한살림 LMO(GMO) 정책방향(안) •(단기) 물품관리 방안 •(중장기) 정부 정책 등 LMO 관련 사회개입 방안	곽현용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11:40~12:00	- 질의응답 •현장 질의응답(기자 등) •온라인 채팅 질의에 대한 응답 •온라인 참여자 질의응답 - 의견 청취	전체 참석자

국가 LMO 검역·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

박제선(한살림연합 미래기획본부장)

1. 국내 LMO(G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 경위

※ 현재 정부가 명확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정부 보도자료(3/26)와 언론보도를 토대로 정리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사건	문제점
2010 ~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보도 기준) B기업 LMO호박 종자 미국 온라인몰에서 구매 후, 국제특송으로 반입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MO는 정부의 수입승인 필요를 요구한다는 규정(LMO법 8조)만 존재. 변칙적 국내 반입 대응 어려움 LMO는 수입승인이 있어야 유통할 수 있음을 법으로 규정한 바(LMO법 8조), 정부는 허술한 검역 관리에 중대한 책임이 있음 현재 농업용 LMO 32개 품목에 대해 국경 검사 절차를 두고 있으나 수입자의 '사전 신고'에 의존 *근거규정: LMO법 제14조, 제36조와 유전자 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장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 위해성평가·심사, 표시·취급관리 등
2011 ~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보도 기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 시설재배에 적합한 주키니 호박개발연구 지원 (언론보도 기준) 해당 호박개발연구지원 사업에 B기업 참여, 해당 연구에서 B기업은 바이러스 및 흰가루병 저항성 계통을 개발하는데 주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연구용으로 LMO를 수입할 경우에도 정부 승인 필요(LMO법 9조) *현재 국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등재 LMO호박(squash)은 바이러스 내성 2종임 '호박개발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준정부기관('11년 지정)으로 LMO안전관리 부실 차원을 넘어 상업용 LMO연구개발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될 수 있음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종자 '가ㅇ금주키니' 품종 등록 *현재 품종 출원등록 소멸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시 LMO 검사 등의 과정 부재 정부는 2018년부터 신품종으로 등록되는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키니 품종 등록 *현재 품종 출원등록 소멸처리 	<p>종자 대상 유전자 변형 농산물 검사 실시.</p> <p>올해 신품종 등록과정 중 LMO 검사를 통해 LMO종자 유통 확인</p>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산 주키니호박종자 수입검역 절차 중 LMO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MO 발견 사실 미공개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관련 사실 미검색 *농식품부의 호박 관련 보도자료는 최근 사안 관련 23년 3월 26일, 23년 4월 2일치 2건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보도자료 미게재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업 신규개발 종자 LMO 판정 - 주키니호박 종자 121종, 애호박 126종 LMO 검사 실시, B기업 주키니 호박 2종 LMO 확인, 애호박 종자 LMO 불검출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발표 -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대상 출하정지(~4.2(일) 24시까지)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 정부 지침에 따라 주키니호박,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볶음밥 4종 판매중단 조치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LMO검사 결과 완료 보도자료 발표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484호 중 17호 양성 *한살림 2농가 LMO 양성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 첨부 후 시중 출하 재개조치 시행 -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은 '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 검수 후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 볶음밥 생산지(한우물)를 통해 정부 전수조사에서 한살림 볶음밥 4종 누락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키니호박 사용 가공식품 '전수조사'의 졸속, 부실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 2농가 주키니호박 LMO 판정에 따른 조합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 자체 검사 의뢰 결정 후 생산지로 부터 검사용 시료(볶음밥 4종) 확보 	

4. 5.	- 한살림, 볶음밥 물품 4종 LMO 검사 의뢰	
4. 7	- 한살림, 검사기관로부터 시험·검사 성적서 수신, 검사기관 통해 검사결과 식약처 통보 - 한살림 <볶음밥 4종 원료 주키니호박의 LMO 검출 관련 반품 안내문*> 게시 - 해당 물품 이용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사결과와 반품회수 안내 * https://bitly.co/l6UY - 한살림, <국내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고에 대한 한살림 입장문*> 게시 * www.hansalim.or.kr/?p=59062	
4. 8	- 식약처, 생산지(한우물) 방문 후 추가검사 시료 수거	
4. 9	- 식약처, 생산지(한우물)에 LMO 검사결과 통보	
4. 10	- 식약처, <‘주키니호박 가공식품 13건 미승인 호박 유전자 추가 검출·조치’ 보도자료 발표 - GMO반대전국행동·한살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후 ‘GMO 졸속 조사’ 비판	- 한살림 자체검사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등의 추가조사 과정에 대한 정보 누락
4. 14	-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키니호박 관련 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공개와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후 아래 4개 대책 제시 요구 ① 국내 LMO(G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 경과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 ② 미승인 LMO(GMO) 종자 국내 반입 방지 조치 마련 ③ 국내 LMO 오염 확산 방지 조치 마련 ④ 피해보상 기준 등 피해보상책 제시	
4. 19.	- 국내 L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사고 해결을 위한 한살림 온라인 긴급 토론회	

2. 한살림 피해 현황

○ 전체 추정 피해액: 19억 9천 646만 6천 534원(23년 3월 조합원 공급가 기준)

- 현재 한살림물류센터와 생산지 보관 중인 폐기 예정 볶음밥 수량은 41,734개, 145,442,812원(산지 출고가 기준)

○ 주키니호박

- 아래 <표>에 출하정지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포함하지 않음

물품	공급기간	공급량 (개, 수량)	공급액 (원, 조합원 가격)
주키니호박	2021년 3월 ~ 2021년 6월	35,415	42,309,023
	2021년 11월~2022년 6월	32,486	42,424,423
	2022년 11월~2023년 3월	37,058	76,347,798
	합계	104,959	161,081,244
사고 이후 반품량(4. 16. 기준)		1,800	3,150,000

○ 볶음밥 4종

물품	공급기간	공급량 (개, 수량)	공급액 (원, 조합원 가격)
채소볶음밥(300g) *주키니호박 함량 2.53%	21년 6월 19일~23년 3월 28일 공급량	92,782	306,148,102
	한살림 물류센터 재고 보유량(폐기 예정)	1,475	5,605,000
	생산지 폐기 (예정)수량	7,410	28,158,000
	소계	101,667	339,911,102
	사고 이후 매장회수 및 반품량(4. 14. 기준)	2,610	9,918,000
새우볶음밥(300g) *주키니호박 함량 3.85%	21년 6월 16일~23년 3월 28일 공급량	77,058	417,456,838
	한살림 물류센터 재고 보유량(폐기 예정)	1,876	11,818,800
	생산지 폐기 (예정)수량	9,420	59,346,000
	소계	88,354	488,621,638
	사고 이후 매장회수 및 반품량(4. 14. 기준)	2,444	15,397,200
소불고기볶음밥(300g) *주키니호박 함량 5.33%	21년 6월 25일~23년 3월 28일 공급량	88,634	497,420,588
	한살림 물류센터 재고 보유량(폐기 예정)	2,217	13,302,000
	생산지 폐기 (예정)수량	12,210	73,260,000
	소계	103,061	583,982,588
	사고 이후 매장회수 및 반품량(4. 14. 기준)	2,346	14,076,000
닭고기볶음밥(300g) *주키니호박 함량 3.7%	21년 6월 19일~23년 3월 28일 공급량	101,731	390,802,962
	한살림 물류센터 재고 보유량(폐기 예정)	3,166	14,247,000
	생산지 폐기 (예정)수량	3,960	17,820,000
	소계	108,857	422,869,962
	사고 이후 매장회수 및 반품량(4. 14. 기준)	2,539	11,425,500
합계	볶음밥 4종 합계	401,939	1,835,385,290
	사고 이후 매장회수 및 반품량(4. 14. 기준)	9,939	50,816,700

3. 사고경위 관련 참고자료

1) 농업용 LMO의 국경감시 체계¹⁾

○ 관리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하에 소속기관 간 업무분담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검사 및 유통단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소관업무: 농업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 생산 및 수출입 승인, 국경검사, 유통 단계 표시제 등

○ 기관별 역할

- LMO 관리업무 전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생산 및 수출입 승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원
- 개발단계 안전관리 및 환경위해성 평가: 농촌진흥청
 - *LMO법 발효시 위해성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LMO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되므로 사전에 환경위해성 심사 실시
 - *국내 LMO 안전성 평가 승인 품목(2015년 3월 현재)
 - *환경위해성 5작물 110종, 인체위해성 심사승인은 7작물 1미생물 129종이 심사승인
 - *환경위해성: 110종[콩(20), 옥수수(56), 면화(22), 유채(11), 알팔파(1)]
 - *인체위해성: 129종[콩(20), 옥수수(67), 면화(22), 유채(12), 감자(4), 알팔파(1), 사탕무(1), 미생물(2)]
- 수출입에 따른 국경감시업무: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사법 개발 및 국내유통단계 표시제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용 LMO의 국경검사 절차

- 근거 규정: LMO 법률 제14조, 제36조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장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 위해성평가·심사, 표시·취급관리 등
- 농업용 LMO 국경검사 절차



1)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plant/lmo/plant_lmo_border.jsp

○ 검사대상

- 환경방출용 종자용 또는 원형상태의 사료용으로 작물재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 전 세계적으로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 가능성이 있는 품목

연번	품 목	한살림 공급작물	영 문 명	학 명	비 고	
1	감자	○	Potato	<i>Solanum tuberosum</i>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 3-2	
2	까마중		Black Nightshade	<i>Solanum nigrum</i>		
3	담배		Tobacco	<i>Nicotiana tabacum</i>		
4	렌즈콩		Lentil	<i>Lens culinaris</i>		
5	멜론	○	Melon	<i>Cucumis melo</i>		
6	면화		Cotton	<i>Gossypium hirsutum</i>		
7	밀	○	Wheat	<i>Triticum aestivum</i>		
8	벤트그라스		Creeping Bentgrass	<i>Agrostis stolonifera</i>		
9	벼	○	Rice	<i>Oryza sativa</i>		
10	사과	○	Apple	<i>Malus domestica</i>		
11	사탕무		Sugar beet	<i>Beta vulgaris</i>		
12	아마		Flax	<i>Linum usitatissimum</i>		
13	알팔파		Alfalfa	<i>Medicago sativa</i>		
14	옥수수	○	Maize	<i>Zea mays</i>		
15	유채		Argentine Canola	<i>Brassica napus</i>		
16	유채		Polish Canola	<i>Brassica rapa</i>		
17	자두	○	Plum	<i>Prunus domestica</i>		
18	장미		Rose	<i>Rosa × hybrida</i>		
19	치커리	○	Chicory	<i>Cichorium intybus</i>		
20	카네이션		Carnation	<i>Dianthus caryophyllus</i>		
21	콩	○	Soybean	<i>Glycine max</i>		
22	토마토	○	Tomato	<i>Lycopersicon esculentum</i>		
23	파파야		Papaya	<i>Carica papaya</i>		
24	호박	○	Squash	<i>Cucurbita pepo</i>		
25	가지	○	Eggplant	<i>Solanum melongena</i>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
26	강낭콩	○	Bean	<i>Phaseolus vulgaris</i>		
27	사탕수수		Sugarcane	<i>Saccharum sp.</i>		
28	유칼립투스		Eucalyptus	<i>Eucalyptus sp.</i>		
29	페튜니아		Petunia	<i>Petunia hybrida</i>		
30	포플라		Poplar	<i>Populus sp.</i>		
31	피망/파프리카	○	Sweet pepper	<i>Capsicum annum</i>		
32	홍화		Safflower	<i>Carthamus tinctorius</i>		
	기타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종자용·사료용·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 생물체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			

〈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별표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 검사 대상목록

* 전 세계적으로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대상으로 함.

○ 현행 국경검사의 한계

-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LMO주키니호박종자는 B기업이 우편·특송으로 국내에 반입함. 검역당국은 LMO 종자의 국내 반입시 '사전신고' 목록을 토대로 검사를 진행함. 또한, 우편·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사전 통관 과정에서 육안으로 X선 검사를 실시하는 수준에 그쳐 소량의 씨앗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움
- 해외에서 LMO종자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가능성이 있는 농작물은 해당 농작물 전체

를 수입금지식물로 지정하거나 LMO 검사 완료 후 반입과 같은 검역절차를 강화해야 함(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또한, 23년 4월 8일 기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등재된 LMO는 942종임. 이중 보리(12종), 겨자류(10종), 대추(4종), 오크라(1종), 콜리플라워(1종)는 국경검사 대상 품목이 아님. 이에 주기적으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의 LMO 등록 현황을 모니터하면서 신규 등록 LMO를 국경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야 함

* <https://bch.cbd.int/en/registries/living-modified-organisms>

- (참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제4조 제1호 가목 및 제12조 제2항 관련)

금지 식물	금지 지역	
1. 벼·왕겨·벼짚과 그 가공품(껍질을 벗긴 쌀은 제외한다)	- 세계 전 지역(일본 및 대만은 제외한다)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	
	감	수입허용지역 -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 [일본] 전 지역 - [뉴질랜드] 전 지역
	포도	- [미국] 하와이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한 전 지역 - [일본] 전 지역 - [뉴질랜드] 전 지역
	참다래 (Actinidia chinensis, Actinidiadeliciosa)	- [미국]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 - [일본] 전 지역 - [뉴질랜드] 전 지역
	다래 (Actinidia arguta)	- [뉴질랜드] 전 지역
	자몽	-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 [일본] 규슈, 류큐열도 및 시코쿠(Shikoku)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감귤 레몬	-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 [일본] 규슈, 류큐열도 및 시코쿠(Shikoku)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뉴질랜드] 전 지역
	라임	-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유자	- [일본] 규슈, 류큐열도 및 시코쿠(Shikoku)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단감 호박	- [일본] 전 지역 - [뉴질랜드] 전 지역
	두리안	- [태국] 전 지역
	양벚 딸기	- [일본] 전 지역
	토마토	- [일본] 요나구니섬을 제외한 전 지역
	아보 카도	-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 [뉴질랜드] 전 지역
	석류	- [이란] 마잔다란(Mazandaran) 주, 파르스(Fars) 주(Neyriz시 제외), 시스탄-발루치스

	<p>탄(Sistan & Baluchistan) 주를 제외한 전 지역</p> <p>-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p>
월굴	<p>- [네팔] 전 지역</p> <p>- [인도네시아] 전 지역</p>
벨론	<p>- [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p> <p>- [일본] 전 지역</p> <p>- [뉴질랜드] 전 지역</p>
참외	<p>- [일본] 전 지역</p>
파인애플	<p>아래 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p> <p>- 아시아 : 이스라엘</p> <p>- 아프리카 :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레위니옹,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베냉,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세네갈, 세인트헬레나, 앙골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토고</p>
3. 호두나무의 열매[탈각(脫殼)된 것은 제외한다]	<p>- 아시아: 레바논·미얀마·시리아·아프가니스탄·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인도·중국·튀르키예·파키스탄</p> <p>- 유럽: 전 지역</p> <p>- 아프리카: 전 지역</p> <p>- 북아메리카: 캐나다·미국</p> <p>- 중·남아메리카: 멕시코, 볼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칠레·콜롬비아·페루</p> <p>-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p> <p>- 러시아·우크라이나·투르크메니스탄·벨라루스·몰도바·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그루지야·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p>
4. 감자·토마토 종자	<p>- 아시아: 아프가니스탄·중국[허베이(河北)·헤이룽장(黑龍江)·장쑤(江蘇)·칭하이(青海)성만 해당한다]·인도(히마찰프라데시·마하라슈트라 지역만 해당한다)</p> <p>- 유럽: 벨라루스·독일·폴란드·러시아·영국(잉글랜드·웨일즈 지역만 해당한다)</p> <p>- 아프리카: 이집트·나이지리아</p> <p>- 북아메리카: 미국(켄사스주·메인주·메릴랜드주·미시간주·미네소타주·미시시피주·네브래스카주·뉴햄프셔주·뉴욕주·노스다코타주·오하이오주·위스콘신주·와이오밍주·노스캐롤라이나주만 해당한다)</p> <p>- 중·남아메리카: 코스타리카·페루·베네수엘라</p>
5. 고구마속식물·나팔꽃속식물·메꽃속식물·마속식물·새삼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카사바 생식물의 지하부	<p>- 아시아: 라오스·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베트남·브루나이·미얀마·싱가포르·스리랑카·인도네시아·인도·중국·대만·캄보디아·태국·파키스탄·필리핀·일본(북위 30° 이남의 다이토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라제도만 해당한다)·몰디브·코코스섬·크리스마스섬·페스카도레스제도·영국령 인도양 식민지(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p> <p>- 아프리카: 전 지역</p> <p>- 북아메리카: 미국·서인도제도</p> <p>- 중·남아메리카: 멕시코·가이아나·베네수엘라·브라질·수리남·페루·프랑스령 기이아나·파라과이</p> <p>-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오스트레일리아·파푸아뉴기니·미크로네시아·멜라네시아·폴리네시아·하와이제도</p>
6. 보리속(<i>Hordeum</i> spp.), 밀속(<i>Triticum</i>)	<p>- 아시아: 이라크·이스라엘·이란·튀르키예·시리아</p>

spp.), 호밀속, 개밀속 및 라이밀속 (Triticosecale spp.) 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유럽: 전 지역 - 아프리카: 알제리·모로코·튀니지 - 북아메리카: 전 지역(서인도제도 제외한다)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뉴질랜드 - 조지아·라트비아·카자흐스탄·러시아·우크라이나	
7.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	
	품목별	수입 허용지역
	가지과 식물의 생경엽 -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	[일본] 홋카이도·규슈를 제외한 전 지역 - [일본] 홋카이도·규슈·혼슈(아오모리현과 미에현에 한함)을 제외한 전 지역 - [미국] 메릴랜드주·펜실베이니아주·웨스트버지니아주·뉴욕주·유타주·네브래스카주·캘리포니아주·몬태나주·애리조나주·콜로라도주·뉴멕시코주·노스다코타주·캔사스주·와이오밍주·델라웨어주·오克拉호마주·사우스다코타주·네바다주·아이다호주(빙엄(Bingham) 및 본네빌(Bonneville) 카운티 지역에 한함) 메인주·미시간주·미네소타주·미시시피주·뉴햄프셔주·오하이오주·위스콘신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전 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전 지역
8. 가지과 식물의 생과실	- 아시아: 대만·아랍에미리트·레바논·미얀마·시리아·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튀르키예·예멘 - 유럽: 전 지역 - 아프리카: 리비아·모로코·알제리·이집트·튀니지 - 북아메리카: 미국·캐나다 - 중·남아메리카: 과테말라·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자메이카·쿠바·아이티·온두라스·니카라과·푸에르토리코·코스타리카·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우루과이·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오스트레일리아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크라이나·몰도바·리투아니아·조지아	
9. 감자, 토마토, 고추(파프리카), Solanum betaceum(tamarillo), Physalis, peruviana (cape goseberry)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및 재식용 묘	- 미국(텍사스주, 아이다호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캔사스,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와이오밍) - 중·남아메리카: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뉴질랜드	
10. 당근, 샐러리의 생경엽(生莖葉)과 재식용 묘	- 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독일 - 아프리카: 모로코	
11. 배나무아과·복숭아속식물 및 나무딸기속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중자는 제외한다)과 생과실(복숭아속 식물은 제외한다)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	
	품목별	수입 허용지역
	배나무아과 및 나무딸기속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중자는 제외한다)과 생과실 - 복숭아속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중자는 제외한다)	- [일본] 전 지역 - [대만] 전 지역 - [일본] 홋카이도·시코쿠·규슈·오키나와현
12. Rutaceae(운향과) ·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중자는 제외한다)	- 아시아: 중국·인도·대만·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미얀마·태국·네팔·예멘·부탄·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일본(오키나와현의 북위 27° 58' 이남지역 및 키카이섬만 해당한다)·방글라데시·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스리랑카·이란 - 아프리카: 모리셔스·레위니옹·코모로·에티오피아·케냐·마다가스카르·남아프리카공화국·에스와티니·짐바브웨·부룬디·카메룬·탄자니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말라위·르완다·소말리아·튀니지 - 북아메리카: 미국(플로리다주·루이지애나주·사우스 캐롤라이나주·조지아주·	

	<p>버진아일랜드(Virgin Islands) · 텍사스주 · 캘리포니아주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 남아메리카: 멕시코,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도미니카연방, 브라질, 파라과이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파푸아뉴기니 · 동티모르
13. 포도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대만 · 이란 · 인도 · 튀르키예 - 유럽: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 크로아티아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스위스 · 포르투갈[비아나카스텔루(VIANA DO CASTELO)지구, 브라가(BRAGA)지구, 빌라헤알(VILA REAL)지구만 해당한다] - 북아메리카: 미국 · 캐나다 - 중 · 남아메리카: 멕시코 · 코스타리카 · 온두라스 · 아르헨티나 · 베네수엘라 · 파라과이 · 브라질 · 에콰도르
14. 아보카도 · 파인애플 · 여지 · Indigofera hirsuta · 테다소나무 · Pinus elliotii · 강낭콩 · 오크라 · 수박 · 무 · 여주 · 고추 · 토마토 · 호박 · 멜론 · 부추 · 치자 · 칸나 · 차나무 · 커피 · 생강 · 알파파 · 후추 · 고구마 · 사탕수수 · 대두 · 옥수수 · 땅콩(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 빈랑 · 코코넛야자(씩이난 묘를 포함한다) · Curcuma longa · 당근 · 까마중 생식물의 지하부, 파초속식물 · 율령과식물 · Calathea spp. · 근대속식물 · Dioscorea spp. · 배나무속식물 · Philodendron 속 · Maranta속 · Stromanthe속 · Ctenanthe속 · Persea속 · Strelitzia속 · 자스민속 · Rhipis속 · Heliconia속, Agathis dammara, Staurogyne속 · 나사말(Vallisneria)속 · Livistona속 · Ficus benjamina · Polyscias속 · Scindapsus속 · Epipremnum속 · Monstera속 · Licuala속 · Johannesteijsmannia속 · Homalomena속 의 생식물의 지하부, 안스름속 식물의 삽수 · 접수 및 생식물의 지하부, Anubias속 · Bucephalandra속 · Cyperus속(잎, 줄기를 포함한 생식물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아메리카: 미국 · 캐나다 - 중 · 남아메리카: 전 지역(칠레는 제외한다) - 아프리카: 전 지역 - 아시아: 인도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파키스탄 · 필리핀 · 스리랑카 · 태국 · 브루나이 · 레바논 · 오만 · 싱가포르 · 예멘 - 유럽: 벨기에 · 프랑스 · 포르투갈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폴란드 · 슬로베니아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오스트레일리아(타즈마니아주는 제외한다) · 팔라우 · 괌 · 미크로네시아 · 파푸아뉴기니 · 솔로몬제도 · 폴리네시아 · 피지 · 하와이 제도
15. 소나무속식물 · 잎갈나무속식물 · 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 · 목재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공목재류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일본 · 중국 · 대만 · 베트남 - 북아메리카: 미국 · 캐나다 - 중 · 남아메리카: 멕시코 - 유럽: 포르투갈 · 스페인(갈리시아(Galicia)주, 카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on)주, 안달루시아(Adalucia)주,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에 한함)
16. Acer macrophyllum, Aesculus californica, Arbutus menziesii, Arctostaphylos manzanita, Calluna vulgaris, Camellia spp., Fraxinus excelsior, Griselinia littoralis, Hamamelis virginiana, Heteromeles arbutifolia, Lithocarpus densiflorus, Lonicera hispidula, Maianthemum racemosum(Smilacina racemosa), Photinia fraseri, Pieris formosa, Pieris formosa ×P. japonica, P.floribunda×P.japonica, Pieris japonica, Pseudotsuga menziesii var. menzies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독일 · 네덜란드 · 영국 · 스페인 · 벨기에 · 프랑스 · 스웨덴 · 이탈리아 · 덴마크 · 노르웨이 · 아일랜드 · 슬로베니아 · 폴란드 · 스위스 · 그리스 · 리투아니아 · 세르비아 · 체코 · 크로아티아 · 핀란드 - 북아메리카: 미국(캘리포니아주 마린(Marin) · 몬트레이(Monterey) · 나파(Napa) · 샌마테오(San Mateo) · 산타클라라(Santa Clara) · 산타크루스(Santa Cruz) · 소노마(Sonoma) · 앨러미다(Alameda) · 솔라노(Solano) · 멘도시노(Mendocino) · 험볼트(Humboldt) · 콘트라코스타(Contra Costa) · 레이크(Lake) ·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 트리니티(Trinity)카운티, 오레곤주 커리(Curry)카운티 및 뉴욕주 나소(Nassau)카운티만 해당한다)

Quercus spp., Frangula californica, Rhododendron spp., Rosa gymnocarpa, Sequoia sempervirens, Trientalis latifolia, Umbellularia californica, Vaccinium ovatum, Viburnum spp, Acer pseudoplatanus, Aesculus hippocastanum, Adiantum aleuticum, Adiantum jordanii, Castanea sativa, Fagus sylvatica, Frangula purshiana(= Rhamnus purshiana), Kalmia spp., Laurus nobilis, Magnolia doltsopa, Parrotia persica, Pieris spp., Salix caprea, Syringa vulgaris, Taxus baccata., Cinnamomum camphora 의 묘목(대목 포 함)·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는 제외한다)과 나무껍질이 붙어 있는 목재류
--

※ 비고

1. 위 표의 수입 금지 식물 중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위 표의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1호의 금지지역에 북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자 유통관리 중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절차²⁾

단계	세부 활동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서 1부(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 서식) -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 신고의 경우) - 신고수수료 납부 증명서 - 수입 적응성 시험확인서(대상작물에 한함) - 품종의 사진(종자관리요강 제7조) - 품종의 종자시료(국립종자원 고시 제2013-3호) - 품종 특성표 및 특성기술서
▼	
신고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서류 검토 - 신고서의 기재사항 - 첨부 자료의 첨부 여부
▼	
품종명칭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명칭등록요건 심사(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 -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
▼	
신고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인에게 신고번호를 부여해서 교부 - 신고내용 공보에 게재 [신고번호, 작물명, 품종명, 신고인]
▼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보호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의 이의 신청접수 - 이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 새로운 품종명칭 접수

2) 국립종자원, <https://www.seed.go.kr/seed/248/subview.do>

▼	
품종명칭등록원부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품종명칭을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 - 품종명칭 등록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

- 문제의 LMO종자 등록시점(2015년, 2017년)에는 신품종 등록과정에서 LMO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신품종 등록과정에서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검사는 2018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함(언론보도* 기준)
 -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101>
- 그러나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3월 26일)는 “국립 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23년)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혼선이 있음
- 올해(2023년) LMO 호박종자 발견은 최근 다른 종자업체가 신품종을 출원하면서 밝혀짐. 다른 종자업체의 신품종 등록과정에서 LMO가 검출되었고 이를 역추적해 문제의 LMO종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 신품종 등록과정이 없었다면 LMO주키니호박이 계속 유통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유전자 오염’ 없는 생태계

-LMO 주키니호박 종자 불법 생산·판매와 LMO 정책 요구의 근본적 개혁

송기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1. ‘유전자 오염’이라는 말

- 국립생태원(2021, 2021년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사후관리 연구) ‘LMO 유전자 오염 실태조사’ ‘유전자 오염 조사’
 - 2009-2021년간 301개지역(중복지역 있음)에서 797개의 LMO 발견
 - 토종 종자의 관점: 국내 LMO 추정작물 발견지역과 토종 잡곡 채종포가 같은 지역일 경우 토종 씨앗 오염 우려

사료공장 운반 중 환경 유출이 아니라 유전자조작 종자 재배라니!

2. 대응 조치(단기)

1) 오염 종자 확산 방지 조치

- 문제의 호박 종자를 아직 보관하고 있는 농가가 유전자 오염 종자인 줄 모르고 종자를 밭에 심는 일이 없도록, 해당 상표를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회수 조치해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종자 ‘상표’ 정보공개청구(4. 16.)

2) 종자 오염 지역 실태 조사와 오염 제거

- 문제의 주키니 호박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생태 환경에서 재배됨으로써, 지역에서 유전자 오염이 확산되었는지 자연 환경 조사를 해야 함
 - 이 조사는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 오염 종자를 구입하여 재배한 농민, 오염 종자를 구입하지도 재배하지도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논밭이 유전자 오염 경작지가 되어 버린 농민을 위한 충분한 배상과 같이 해야 함

3) 피해 배상 조치

(1) 개인(회사) 책임 성립

① 불법 수입자 책임

- 자기의 의사로 유전자 오염 종자를 수입한 원천공급자
 - 유전자 오염 종자인 줄 모르고 수입했다는 항변은 허용되지 않음: 국내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외국의 종자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해결

② 표시상의 종자회사 책임

- 만일 수입자와 별도로 종자에 성명, 상호, 상표 등을 표시한 자가 따로 있다면(표시제조업자), 불법 수입자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짐
 - 유전자 오염 종자 생산자로 표시된 자는 그 제조물에 대한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배상 책임
- 표시상의 결합
 - 유전자 오염 종자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는 책임

(2) 국가 책임의 성립

① 유전자 오염 종자 신고를 수리한 행위

- 국가가 종자산업법 38조, 시행규칙 27조, 종자관리요강 20조에 따른 종자시료를 제출받고도 유전자 오염을 밝히지 못하고 그 생산 판매 신고를 수리한 과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보호 의무 성립 요건으로 정한 ‘매우 불충분한 조치’
 - ※ 종자산업법 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예산 범위 내 피해 보상)는 국가가 생산·보급한 종자에 적용

4) 모든 종자 판매 신고에 유전자 오염 검사 의무화

3. 근본적 조치: 생태 사회, 생태 문명

1) 만일 문제의 호박을 식약처의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수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 (1)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 차원을 넘어 접근할 필요
- (2) LMO 정책 요구의 근본적 개혁
- (3) 유전자 오염이 없는 생태계

2) 향후 과제

- (1)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유전자 오염 규제에서 제외하려는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 (2)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의 근본적 개선

“자부심 하나로 농사지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 죄인 된 기분”

송용식(한살림 주키니호박 생산자)

주키니호박과 둥근애호박을 생산하는 한살림 생산자 송용식입니다.

4월 13일, 국립종자원 본원에서 세 분이 제 농장에 왔습니다. 옥천농협에서도 사람이 나왔습니다. 3월 27일, 국립종자원이 처음 제 농장에 방문해서 육묘 중이던 주키니 모종을 가져가며 출하금지를 통보한 날부터 딱 17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키니 호박이 엘엠오 양성판정이 나왔다면 폐기 명령서를 보낸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 3일 종자원에서 나와서 제 농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의심 출입 및 식물채취 금지”라고 딱지를 붙여 놓은지 10일 만이었습니다.

주키니호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눈이 빠지게 기다렸건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주키니 호박 몇 개나 떼었습니까?” 였습니다.

몇 개 따서 시중에 팔아 먹었냐는 말로 들렸습니다. 감시하러 온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울화통 치미는 소리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갔습니다. 보상을 위한 제대로 된 조사도, 언제 폐기하겠다는 일정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는 어제 공문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며 그냥 갔습니다.

저희 주키니호박 시설하우스에는, 영어로 댄저(DANGER), 위험, 안전제일, 이렇게 붉게 쓰여진 띠가 둘러쳐 있습니다. 하우스 입구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의심 출입 및 식물채취 금지”. 붉은 색깔로 낙인찍듯 붙여 놓았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수십년 동안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때로는 주변의 질시와 눈총을 받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유기농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와 국민들 앞에 제가 큰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이게 저의 잘못입니까? 저는 자가채종을 해서 호박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40일 동안의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저희 농장이 모두 잠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키니종자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종자업체와 정부의 종자관리 시스템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부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며, 예산 타령하면서 종자값 인건비 몇 푼 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박 농사 하나에 저와 제 아내, 두 딸이 온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한살림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품질 좋은 주키니를 공급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다 폐기하고 주키니 호박도 지을 수 없다니요?

친환경 주키니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친환경 필지는, 친환경 인증은 어떻게 되는지, 주키니를 못 심으면 다른 작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정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농사는 심어야 할 때를 놓치면, 맨 땅에 풀 농사만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키니 호박 농가, 특히 친환경 주키니 호박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비자 조합원들이 GMO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강말숙(한살림동서울생협 이사장)

어제 된장찌개에 넣은 주키니 호박이 LMO 종자 호박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 이유식에 넣은 주키니 호박이 LMO 종자로 기른 주키니 호박이라는 뉴스를 다시 듣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녁에 볶음밥을 먹은 조합원이 나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눈 앞이 까마득할 것입니다. GMO, LMO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도 유전자 변형 어찌고 하는 이야기는 얼핏 스쳐서라도 들었을 테니까요. 아마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된장찌개를 원망해야 할지, 우리 아기 이유식을 먹인 기억을 머리에서 삭제해야 할지.

‘한살림’. 이름만 들어도 먹을거리를 제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체라는 걸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살림은 조합원이 한살림 매장에 있는 모든 물품, 한살림 장보기 사이트의 전체 물품 취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조합원들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참 먹거리에 대한 마음이, 가치가 총 집결된 곳이 한살림 매장의 물품, 한살림 장보기에 있는 물품이니까요!

그런데 “한살림은 뭐 하고 있었지?”, “한살림이 그럴 리가!”, “한살림도 똑같구나”라는 LMO 사고(?)에 대한 우리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통되고 본인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한살림 조합원들, 그리고 한살림을 평소에 그다지 부드럽게 바라보지 않았던 분들은 한살림에 대한 거침없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간 차이일 수 있지만 많은 조합원이 황망하고 막막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생각이 멈추는 듯 했으니까요.

아차! 하는 막막한 순간에 우리 한살림 생산자님이 떠올랐습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정성으로 마련하시는 흙속, 땅속 먹을거리를 조합원에게 정직하게 전달하시는 생산자님들입니다. 주키니를 생산하시는 생산자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시중 유통 종자가 LMO라는 것을 꿈에라도 생각해 보셨을 리가 없었을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산자님이 LMO 종자를 심었을 리가 없다는, 생산자님을 향한 믿음도 스스로 되짚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라는 거대 조직은 국민에게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살림은 20년 동안이나 GMO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험을 말하자면 1990년대 초에 한살림농산이 TV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방송 시청 후 한살림 가입을 마음 먹었습니다. 또 유전자변형물질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생산하는 세계 거대기업 몬산토의 존재도 알게 되었습니다. 몬산토가 지구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는지 똑똑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의적인 것이라기보다 밥상을 차리는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실천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몬산토는 아주 야

만적인 집단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를 보십시오. 우리 한살림은 오랜 기간 식품 전성분 공개하기,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요구를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살림이 먼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셔야죠. 마치 정부만 탓하고 한살림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라고요. 한살림은 지금 더 확실하게 GMO 반대운동을 선언하고 싶을 것입니다. 정부의 제 역할을 요구하고, 우리 한살림이 해야 할 역할로 GMO 반대운동을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한살림 조합원이 우리 집 밥상, 한살림 조합원 밥상과 대한민국 국민의 밥상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밥상이 인간 존중을, 생명 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밥상이 되기만을 바라면서 한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왜 LMO 주키니 호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밥상에 올라왔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국가의 GMO 관리 방안을 믿었던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평생 휴과 함께 먹을거리를 생산해 주시는 분들의 삶이 국가의 무대책, 무책임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GMO를 생산한 것이 생산자님 잘못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더 이상 불안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는 싫습니다. 대한민국 안의 한살림 조합원들은 지금도 생명의 가치로 밥상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나라의 국민으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삶은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이때까지 한살림은 GMO 반대를 외치고 외쳤습니다. 국가를 향해 외쳤고, 몬산토를 향해서도 외쳤습니다. 지금이 우리 한살림이 GMO반대운동을 가다듬을 때라 생각합니다. 콩, 옥수수 이외의 작물에도 GMO(LMO)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정부의 무책임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생산자도 소비자도 잠깐 눈앞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니 이번 사태의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가 끓여 먹은 된장찌개에서, 우리 아이 성장 튼튼 이유식에서 먹을거리 위험이 없는 한살림 세상의 물품을 한살림 조합원님은 지켜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더 늦기 전 우리 밥상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 땅 모든 생명 가치들이 과도한 욕심과 욕망으로 훼손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한살림 마음, 한살림 가치와 밥운동을 더 넓은 세상으로 알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MO 씨앗과 GMO 식품, 함께 막아요

우준(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장)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산물위원들의 한살림 농축산 물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생산자와 실무조직에 전하고, 생산지의 이야기를 다시 조합원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한살림성남용인과 한살림청주 위원들과 전국의 유정란 생산자들이 모여 약정과 생산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유정란 생산 관련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MO주키니 사건을 접하면서 농산물위원들 역시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한살림조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LMO를 기르고 물품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힘겹게 받아들이고 나니 더 큰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주키니호박의 유통을 중지시켜 주키니호박에 대한 전 국민의 신뢰를 흔들었고, LMO종자를 수입, 육종해서 판매한 회사와 해당 종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키니를 이용한 가공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능력도 없었고,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검역을 믿고 종자를 기른 생산자와 그 농지에 대한 정화와 보상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오래된 문제가 드러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주키니 생산자들에게 너무도 게으르고 가혹합니다.

국가검역이 무너진 상황에서 농산물 위원들은 주키니를 넘어 국가가 과연 다른 종자에 대한 검역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GMO가 아닌 작물을 기르고 먹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표시하고 유통, 소비할 권리처럼 GMO가 아닌 종자와 열매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2024년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를 언급했지만, 종자검역이 무너지면 식품의 GMO표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GMO가 개발되어 있는 모든 농산물 각각의, 국내 유통 씨앗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LMO종자 재배를 철저히 막아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국내 어디에서든 LMO가 재배된다면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LMO를 키울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모두 함께 확인했습니다. 관행농민도, 한살림 생산자도, 상표도 확인하지 않고 모종을 몇 가지씩 사서 텃밭에 심는 저도요. 종자는 합성농약처럼 사지 않고 뿌리지 않음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자검역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잔류농약 검사처럼 GMO검사도 일반화될 것입니다. 그 비용은 GMO 재배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GMO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로 거대기업이 GMO종자와 특허권과 농약을 묶어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기업과 연구자가 정부지원 신품종개발사업에 LMO 종자를 끼워 넣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

다.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해당 기업과 대학, 정부기관의 잘못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정부가 먼저 사과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살림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확인한 것은 지체 없이 정확한 정보를 조합원들께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살림 조합원들도 실망하고 화나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이번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정부 역시 더 늦기 전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께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위원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LMO문제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학습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가 LMO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언제 어떻게 실행하는지 꾸준히 살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토론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꼭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MO 오염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 ‘재발·오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곽현용(한살림연합 전무이사)

1. 사고의 성격과 시사점

-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내에는 LMO의 상업적 재배가 없다(zero)’고 공언. 농민과 소비자 모두 해당 종자가 LMO인지 모르고 생산(재배)·가공·유통·소비를 해 온 상황 발생
 - * LMO는 사료용, 가공재료, 시험·연구용으로 정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국내 반입 등이 가능함
- 국내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LMO주키니 호박이 8년 동안(’15~’23년) 농지와 밥상을 유린한 사고로, 정부의 LMO 관련 검역·안전관리체계 부실 책임을 강하게 추궁해야 하며, 정보공개로 시작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아울러 한살림을 비롯한 GMO반대 운동진영도 2018년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GMO반대운동이 잠잠해 졌던 것도 사실임. 또한, ‘상업적 LMO 재배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 기대 GMO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음. 이번 사고의 진상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성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GMO 검출 이후 한살림에 실망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임.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 분명함. 그러나 식품 분야의 대정부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정부가 못하는 일을 한살림이 해소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살림을 이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조합원들이 느끼는 실망과 우려를 확인하고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모아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고의 해결책을 찾고, 내부 GMO 관리기준 등을 정돈해야 함
- 더불어 LMO호박 생산·유통 사고는 한살림 외부 요인으로 한살림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했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 LMO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상 초유의 사고를 맞아 조합원과 생산자의 실망과 우려를 확인하고,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함. 오늘(4/19)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국내 LMO호박 종자 생산·유통사고에 대한 조합원과 생산자의 다양한 생각을 확인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대안 마련을 포함해 앞으로 한살림 LMO 관련 정책(물품사업과 제도개선 등)을 정돈해 나가야 함
- 문제 해결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조합원과 생산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황을 함께 인식·공유하며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것임. 한살림은 식약처의 ‘1차 전수조사’ 과정 중에 한살림 물품의 조사 누락을 확인한 후 선제적으로 LMO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안내함. 정보공개가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의 기본이 된다고 할 때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 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음. 한살림의 선제적 조사시행과 결과 공개는 식약처의 추가 조사를 이끌어 내 LMO 식품 21건을 추가 발견하게 했음(한살림 자체조사 시행 전 식약처 검출은 5건에 그침)

2. 한살림 LMO 관리

- 한살림은 2000년부터 GMO(LMO)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GMO 반대활동을 펼쳐왔음
- 또한, 사료와 식품가공용으로 국내 반입이 허용된 LMO 6종(대두·옥수수·면화·유채·사탕무·알팔파)의 원료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LMO 상품화가 활성화된 유채 가공품(유채유 등)도 공급하지 않고 있음

- 그동안 LMO 관련 검사는 사료와 가공식품 원부재료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콩(사료용·가공용)과 옥수수(사료용·가공용), 그리고 2017년 국내 자생 LMO가 발견된 유채와 같은 작물에 집중했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한살림 LMO 검사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콩	콩 (사료용·가공용)	옥수수	옥수수 (사료용)	기타	합계	비고
2020	10	2	6		10	28	- 기타: 사료용 작물
2021	21		8		2	31	- 기타: 잣, 유채
2022	26	10	3	2		41	

-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LMO 농작물이 많이 쓰이는 축산사료도 자주기준을 통해 Non-GMO 및 국내산 사료 확대를 권장하고 있음. 축종별 생산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초식가축과 산란계 등 조사료 급여 축종은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 확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배지 면적 확보가 어려울 경우 외부 조사료 구입을 허용하고 있음³⁾.

축종	한살림 자주기준
축산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의 생산과 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Non- GMO 및 국내산 사료 원료를 확대하기 위한 실천을 지속해야 함 - 초식가축, 산란계 등 조사료를 급여하는 축종의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단, 재배지 면적의 확보가 어려울 시 외부의 조사료 구입 등을 통해서라도 조사료 급여를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사료의 원료는 유해물질의 오염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때에 사용해야 함 - 사료의 저장 장소는 오염이나 변질의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설치류 등 유해 동물의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해야 함 - 축종의 사양관리, 조사료급여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료의 급여 총량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기 이후 GMO 사료 배제 - 자급축산(국내산 부산물 100%) 이상. 수입산 원료와 구입 배합사료 사용 금지 - 소규모 경축복합농의 자가 농사부산물과 사료작물 활용. 한살림농사의 부산물(벼짚, 찧겨, 콩각지 등)과 사료용 보리, 쌀 등 - 국내산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일정 범위의 지역자급이 실현되기까지 국내산 부산물 및 사료작물도 허용 - 사료포의 운영은 농가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도록 하나, 사육농가는 한살림 농사를 짓고 있어(1차 농산물의 약정 출하)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함
산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성장촉진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은 구입 배합사료 및 자가 제조 사료를 사용해야 함 • 항생제, 성장촉진제 혼합 금지 •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의 사용을 금지 • 자가사료로는 곡류의 부산물이나 생균제, 황토, 숯, 부엽토 및 채소류의 부산물 사용 가능(부추나 파 종류의 품종들은 회피). 단, 난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폐각패분 등 사용 시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

3) 한살림, <한살림 자주기준서>,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수 등 정부 허가 하에 유통되는 바이오 음수도 가능 - 풀사료 및 초지·재배포의 운영 •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량은 닭의 활동과 계란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비율로 설정한다. 산란기에는 풀사료(청초, 풀김치 등)를 마리당 15g 이상 급여하며, 육성기에는 닭의 상태나 기호에 따라 양을 조절하며 지속적으로 급여 •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분이 풍부하게 포함된 풀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사육두수에 맞는 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포를 확보 • 풀사료 급여기간: 최소 6개월은 청초로 급여하며, 나머지 기간은 풀김치(엔실리지) 형태로 급여 • 초지 및 재배포 운영: 1,000수당 500평 이상의 초지나 재배포를 운영. 사료 재배지는 해당 작기에는 농약 사용 금지 • 외부 조달 허용: 초지나 재배포 운영을 진행하였음에도 풀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내산 풀사료를 구입하여 사용가능함. 단, 외부구입 시에는 구입 영수증 및 구입처 등의 내역을 영농일지에 기재
육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가 첨가되지 않은 구입 배합사료 및 자가 제조사료(발효사료, TMR 등) -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사료 금지. 농가 및 국산 부산물을 활용한 조사료의 급여 권장
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은 구입 무항생제 사료 및 자가 제조 사료(미생물 발효 조사료 급여)

〈표〉 축종별 한살림 사료 급여 기준

- 그동안 ‘국내에서 상업적 LMO 재배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 기대어 정부 승인 6종 이외의 LMO 재배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LMO 오염에 다소 느슨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여러 검사기관에 볏짚 4종의 주키니호박 LMO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콩·옥수수 등 정부 승인 6개 LMO 작물 이외의 검사 경험 부족으로 검사의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3/26)한 ‘외국에서 개발·유통중인 30여 개 농산물 품목 종자 전체 대상 LMO 조사’의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 등재 LMO 작물을 중심으로 LMO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부 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방법 관리 작물: **콩**(Soybean), **옥수수**(Maize), 면화(Cotton), **감자**(Potato), 파파야(Papaya), 유채(Canola), 사탕무(Sugar beet), **벼**(Rice), 카네이션(Carnation), 알팔파(Alfafa), 아마(Flax), **호박**(Squash), 장미(Rose), **밀**(Wheat), **강낭콩**(Kidney bean) 등
 - 또한, 농림축산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대상 작물은 32개
 - BCH 등재 LMO 작물은 942개(23. 4. 8. 기준). 옥수수 334개, 감자 137개, 면화 73개, 카놀라(유채) 59개, 콩 51개, 밀 24개, 호박 2개 등

3. 2023년 국내 L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사고 대응 방향

○ 정보공개와 대국민 사과를 재발방지의 시작과 기본

- 사고의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밝히는 정보공개는 재발방지의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한 기업이 LMO 종자를 들여왔다고만 밝혔을 뿐, 국내에 LMO호박종자가 들어온 경위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
- 정부에게 택배 국내반입 LMO종자의 품종, 국내 반입 경과, 품종 등록과정, 품종 등록 후 판매 및 생산량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함

○ LMO 국내 유입 방지

- 국가검역 과정에서의 LMO 관리 강화가 필요함. 외국에서 개발·유통되는 LMO 종자와 작물을 수입금지 식물로 지정하거나 ‘LMO 검사 완료 후 반입’과 같은 검역절차를 강화해 LMO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LMO 오염확산 예방

- LMO호박의 본격적인 국내 생산·유통의 시작인 LMO호박종자의 육종과 품종 출원등록 등의 경위도 석연치 않음. 종자 판매의 시작인 품종 등록과정에서 LMO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충격이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음
 - 정부에서 아직까지 LMO호박 종자의 상품명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칫 LMO주키니 호박 생산·유통 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지금 즉시 LMO종자의 상품명을 공개하고,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부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외국 LMO 개발·유통 30여 개 농산물 품목 종자 전체 대상 LMO 조사 실시’ 시행계획은 시급히 제출되어야 함. 국민들은 LMO가 주키니호박에만 한정된 일이 아닐지를 걱정하고 있음. 또한, 해당 조사는 현재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LMO 품목까지 확대해야 함
 - 한살림은 현재 LMO 교잡 가능성 존재 박과 작물* LMO 확인 조사를 진행중임. 박과 작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문제종자를 대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박과 작물을 대상으로 LMO 키트 검사(간이속성검정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 오이, 참외, 수세미, 호박, 수박, 멜론, 동아, 여주, 울외 등

○ LMO 오염피해 피해 보상

- 정부는 ‘판매중단, 수거와 폐기 조치’만 취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보상 범위를 “예산한도 내”로 한정된 것도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음
- 한살림 추정 피해액은 19억 9천만 원(23년 3월 조합원 공급가 기준)으로,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을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국민집단소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는 한살림이 입은 브랜드 가치 저하 등 유무형의 피해보상을 함께 요구할 수도 있음
- 특히, 피해 농민과 농지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제시해야 함. 2017년 LMO 유채와 면화 오염시 취한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2년 정도 동일 작물(주키니호박) 재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대체작물 배치 등 한살림 농지와 생산자 생활보장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7년 LMO 유채와 면화 오염 당시와 동일하게 피해농지 주변 환경영향조사(최소 2년)를 요구하고, 2023년~2024년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파종 전 무상 LMO 검사 지원 등도 요구해야 함
- 아울러 비의도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농지의 친환경 인증 유지 등을 요구해야 함
- 마지막으로 재배작물 등에서 미승인 LMO 검출시 폐기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및 수입자 회수·폐기 의무 규정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LMO법 개정도 요구해야 함

-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구분	한살림 대응방향
정보 공개	① <u>택배 국내반입 LMO종자의 품종, 국내 반입 경과, 품종 등록과정, 품종 등록 후 판매 및 생산량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u> 요구 · 4/14 사건경위 등 정보공개와 피해보상 요구 기자회견 개최(농식품부 앞)
재 LMO	① <u>식물검역 강화</u> 요구: <u>외국 개발·유통 LMO 종자 수입금지식물 지정</u> 또는 <u>LMO</u>

발 방 지	국내 유입 방지	<p>검사 완료 후 반입 등 → 현재 LMO작물 32종만 LMO 국경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 중</p> <p>② 정부 차원의 BCH(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LMO 등록 현황 정기적 모니터와 수입금지식물 지정 요구</p> <p>* https://bch.cbd.int/en/registries/living-modified-organisms</p>
	LMO 오염확산 예방	<p>① 한살림 작물 대상 LMO 교잡 가능성 존재 박과 작물* LMO 확인 조사 실시 * 오이, 참외, 수세미, 호박, 수박, 멜론, 동아, 여주, 울외 등 · 박과 작물 생산자 대상 인터뷰: 문제 종자 대목 사용 여부 등 · 박과 작물 대상 LMO키트 검사(현재 호박류 검사 가능여부 확인 중) 검토 중</p> <p>② 정부, 외국 LMO 개발 및 유통 30여개 농산물 품목 종자 전체 대상 LMO 조사 (3/26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실시 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p> <p>① 정부 LMO 검사 실시시 외국 개발·유통 LMO 종자 외 국내 연구개발 LMO 품목으로 확대 요구(벼, 콩, 배추, 고추, 감자, 화훼 등)</p> <p>①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시 LMO 검사 의무화 명시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제도> 개선 요구 * 2018년 이후 신품종 등록 종자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사 실시</p>
	피해 보상	<p>① 한살림 피해 범위(액) 산정 및 피해보상 요구: 주키니호박 및 가공물품 4종 전체 피해보상 요구</p> <p>② 종자산업법 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예산범위” 등 개정 요구</p>
	피해 보상	<p>① 최소 '23~'24년 주키니호박 농사 불가능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한살림은 대체작물 배치 등 농지와 생산자 생활보장책 제시</p> <p>② 비의도적 상황임을 고려 피해농지의 친환경 인증 유지 요구, 피해농지 주변 환경영향조사(최소 2년) 요구</p> <p>③ 2023~2024년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파종 전 무상 LMO 검사지원</p> <p>④ 재배작물 등에서 미승인 LMO 검출시 폐기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및 수입자 회수·폐기 의무 규정 마련 요구(LMO법 개정)</p>

정부는 한살림 84만 세대 조합원과 2천3백여 세대 생산자에게 사과하고 보상책을 마련하라

지난 3월 26일 약 8년 간 GMO 유전자호박이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참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사건 경위 등 사고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피해 농민과 국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GMO에 반대하며 건강한 농지와 밥상,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한살림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다. 정직하게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생산자의 유전자호박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되었다. 친환경 인증까지 취소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또한, GMO와의 교잡 등의 우려로 해당 농지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의 종자 관리가 철저했다면, 어렵게 친환경 농사를 지켜온 농민을 허탈하게 만든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한살림은 그동안 식탁과 농지, 생태계를 GMO 오염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가공식품의 추가 피해도 확인했다. 정부는 4월 1일 유전자호박을 사용한 가공식품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문제가 있는 가공식품은 폐기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살림은 정부 조사에 한살림 물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별도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투명하고 정직하게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해 조합원의 신뢰를 쌓아온 한살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한살림 자체 검사결과 한살림 볶음밥 4종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 해당 볶음밥을 제조한 가공 생산지는 이미 정부의 GMO 검사를 마친 후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정부 조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국가 검역체계와 GMO관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호박 생산 농민과 소비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다. 농민은 유전자호박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고, 소비자는 식탁의 GMO 오염이라는 경험하지 않았던 식품안전을 우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 정부는 한살림 84만 세대 조합원과 2천3백여 세대 생산자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에게 사과하라.
- 정부는 지난 8년 동안의 LMO(GMO) 종자 유통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또한, LMO(GMO) 종자 유통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
- 정부는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

2023년 4월 7일(금)

한살림연합

(참고 2) 국내 LMO(G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 관련 정부 대책 요구사항

※ 2023년 4월 14일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열린 <LMO 국가검역·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후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함께 농식품부에 전달한 ‘국내 LMO(G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 관련 정부 대책 요구사항’입니다.

국내 LMO(G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 관련 정부 대책 요구

1. 국내 LMO(G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 경과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

- 지난 3월 2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종자를 한 기업에서 정부 승인 없이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상품화해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4월 12일)까지 문제 종자의 품종과 상품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후 LMO주키니 호박의 생산과 유통이 반복될 우려를 낳습니다. 이에 시급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① 문제 LMO 종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폐기 지침 제시
- ② 2015년 LMO 종자의 국내반입 과정과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 ③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시설재배에 적합한 주키니 호박개발연구 지원(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보 공개
- ④ 문제 LMO 종자의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량과 판매량 및 작물 시중 유통량 등 전반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2. 미승인 LMO(GMO) 종자 국내 반입 방지 조치 마련

-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LMO 종자를 택배 등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LMO 관련한 안전관리에서 커다란 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호박은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지정·관리>의 ‘생식물의 지하부’만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은 LMO(GMO)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① 식물방역법을 통해 관리하는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지정·관리> 개선: 외국에서 LMO 개발·유통 종자 및 작물 전체의 수입금지식물 지정
- ② 국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의 LMO 등록 현황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신규 등록 LMO의 수입금지식물 지정 제도 마련

3. 국내 LMO 오염 확산 방지 조치 마련

-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내에는 LMO의 상업적 재배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결국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내에서 LMO 작물의 광범위한 재배가 이루어진 만큼, LMO 오염 확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또한, 해당 호박 종자는 2015년과 2017년에 품종을 등록했습니다. 품종·수입판매 신고 과정에서 LMO 검사가 누락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 가○금주키니: 2015. 7. 27. 출원, 2015. 8. 15. 출원공고⁴⁾, 현재 출원등록 소멸처리
 - 대○주키니: 2017. 8. 28. 출원, 2017. 9. 15. 출원공고⁵⁾, 현재 출원등록 소멸처리
- ①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3/26)에서 제시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 실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 ② 현재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LMO 품목으로의 관련 조사 확대
 - 2013~17년 기준 국내 LMO 연구현황은 총 146건. 이중 식물이 13작물 111건(벼, 콩, 배추, 고추, 감자, 화훼 등)
 - ③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제도> 개선: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시 LMO 검사 의무화 규정 명시

4. 피해보상 기준 등 피해보상책 제시

- 정부는 “LMO 품종으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의 식물체 전체 폐기 및 출하 연기 등에 따른 품질 저하 등 평가 후 실비지원”을 제시(3월 26일 보도자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4/12)까지 구체적인 피해보상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가, 유통업체, 소비자 지원범위를 “예산한도 내”로 한정된 점도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 특히, 피해 농지는 폐쇄 조치 이후 추가 조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 ① 피해 농가·유통업체·소비자 대상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 제시
 - ② 피해농지 대상 환경영향조사 실시
 - ③ 피해농지 향후 작물 재배 기준 제시
 - ④ 이후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파종 전 무상 LMO 검사 지원
 - ⑤ 친환경 농지의 경우 ‘비의도적 상황’임을 감안한 친환경 인증 유지 등의 방안 모색

2023년 4월 14일

GMO반대전국행동·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4) 국립종자원 품종보호등록현황: <https://bityl.co/I5Vk>

5) 국립종자원 품종보호등록현황: <https://bityl.co/I5VI>

‘구멍난 LMO 검역·관리체계’, 대국민사과와 정보공개가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참담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LMO주키니호박이 우리 땅에서 재배되고 유통되어 시민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기간도 무려 8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LMO는 한 건도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LMO에 반대해온 GMO반대전국행동과 시민단체들은 사료용이나 식품가공용 등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온 옥수수와 콩과 같은 LMO작물에 주목했습니다. LMO호박이 생산, 유통, 가공, 소비가 되었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LMO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우리 땅과 먹거리의 LMO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LMO호박 생산·유통 사고를 접하고 커다란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을 시민과 농민을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MO주키니 호박은 국내에서 상업적 재배 자체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당연히 가공과 유통도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검역 당국을 믿고 LMO종자가 돌아다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공 생산자들도 LMO호박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LMO 주키니호박이라는 사실과 LMO 원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인지를 알고서 이를 구입·이용한 소비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와 선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LMO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입니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국내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LMO주키니 호박이 8년 동안 우리 농지와 밥상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LMO 관련 검역·안전관리체계의 부실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미승인 LMO를 확인했다’며 ‘판매중단, 수거와 폐기 조치’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LMO의 상업적 재배를 금지하는 국가의 정부라면 법으로 금지하는 LMO호박 유통사고에 책임을 통감하며 농민과 가공생산자, 소비자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관리부실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공개는 재발방지의 기본입니다.

사고의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밝히는 정보공개는 재발방지의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4/12)까지 한 기업이 LMO 종자를 들여왔다고만 밝혔을 뿐, 국내에 LMO호박종자가 들어온 경위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015년 한 기업이 LMO호박 종자를 택배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할 뿐입니다.

과거 언론보도를 보면 문제의 B기업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내병성 주키니 호박개발연구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기업의 연구 주제는 ‘바이러스 및 흰가루병 저항성 계통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에 등재된 LMO호박은 2종으로 모두 바이러스 저항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LMO안전관리 부실을 넘어 준정부기관이 LMO상업화 연구개발 사업에 정부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역과정을 포함한 전체 LMO 안전관리체계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검역 과정에서의 LMO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개발·유통되는 LMO 종자와 작물을 수입금지식물로 지정하는 등 LMO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LMO호박의 본격적인 국내 생산·유통의 시작인 LMO호박종자의 육종과 품종 출원등록 등의 경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종자 판매의 시작인 품종 등록과정에서 LMO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충격이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직까지 LMO호박 종자의 상품명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LMO주키니 호박 생산·유통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LMO종자의 상품명을 공개하고,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과정에서 LMO 검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외국 LMO 개발·유통 30여개 농산물 품목 종자 전체 대상 LMO 조사 실시’ 시행계획은 하루빨리 나와야 합니다. 국민들은 LMO가 주키니호박에만 한정된 일이 아닐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는 현재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LMO 품목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농민·소비자·생산업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판매중단, 수거와 폐기 조치’만 취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LMO 품종으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의 식물체 전체 폐기 및 출하 연기 등에 따른 품질 저하 등 평가 후 실비지원”을 발표했습니다(3/26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그러나 현재(4/14)까지 농민·소비자·생산업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범위를 “예산한도 내”로 한정된 것도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농민과 농지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타들어가는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LMO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번과 같은 참담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GMO반대전국행동과 회원단체들은 LMO의 국내 유입과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국내 L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GMO반대전국행동·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고삼농협,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녹색당, 녹색연합,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폐내똥영농조합,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회참여국단 돌샘기,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 서울먹거리연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아미가시습실현지역농조합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우), 익산학교급식연대, 자연을담은사람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경농회,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토종씨드림, 팔당생명살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푸른들영농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마음공동체,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이상 84개 단체)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 책임지고 해결하라! **- 투명한 정보공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탁이 GMO 주키니호박으로 오염된 게 확인되었다. 그것도 무려 8년 넘게 GMO 주키니호박이 유통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보도자료에서 주키니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등과는 다르다고 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 주키니호박도 동네 슈퍼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섭취하는 주식과 같은 호박이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대표적으로 종묘회사 명칭과 호박 품종 공개를 하지 않은 일이다. 현장 농민과 유통시설, 급식시설 등이 스스로 확인해 GMO 주키니호박을 격리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이 중요한 보도자료를 모두가 잠든 일요일 밤 10시에 배포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농림부는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다. GMO 주키니호박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호박과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내 검역체제 자체를 스스로가 무시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해당 GMO 주키니호박의 인체 섭취 위해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국내 전문가는 근거와 실명을 밝히기 바란다. 더욱이 환경위해성도 문제없다고 하는 것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실제 농림부의 검역실패로 2016년 국내에서 수입 된 GMO 유채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GMO 주키니호박 사건을 은폐시키고 축소시키는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보공개가 중요하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 GMO 종자가 들어왔고 어떤 회사가 수입했으며 그 과정에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2015년부터 얼마만큼의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농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과 동시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GMO 주키니호박은 생명력이 있는 LMO인 만큼 재배지 인근 조사도 진행해 GMO 주키니호박이 주변 작물로 퍼져가거나 환경으로 퍼져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매년 주키니호박을 먹을 때마다 GMO 우려를 걱정해야 할 것이며 주키니 농가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부는 안일한 GMO 관리 관행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쇠신해서 농민들에게 GMO 종자 걱정 없는 농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GMO 우려 없는 밥상을 차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검역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은 GMO없는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GMO 취급 금지를 국가적으로 해야 하며 GMO 규제 완화 법안 추진, GMO 수입 등 GMO 취급과 관련한 행위 모두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농민과 국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GMO 유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27일
GMO반대전국행동

명확한 정보공개, 농민 피해 보상, 가공식품 처리 방안 요구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온통 뒤숭숭하다. 국민들은 정부가 먹거리 검역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에 분통이 터진 상황이고 농민들은 고생해서 농사지은 호박이 하루아침에 GMO로 판명 나 망연자실하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호박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 없이 찌개나 국이 나오지 않은 영양결핍 밥상을 마주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3월 27일부터 벌어진 대한민국의 풍경이다.

그러나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떤 GMO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며 어느 회사의 주키니호박 종자가 GMO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유통된 것인지 모두 몰음포다. 이런 상황이니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번 사건에서 GMO 주키니호박 종자를 유통했다고 지목 받은 종자회사는 2010년에 해당 GMO 종자를 공식절차를 거쳐 들여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유통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체 뭐가 사실일까?

더욱이, 농민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이미 시중의 주키니호박 값은 폭락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다는 농민도 있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주키니호박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농민들이 태반이다. 주키니호박과 애호박을 같은 밭에서 재배한 경우 애호박도 오염되었을까 우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도 없고 안내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농민들 입장이다.

국민들은 GMO 주키니호박이 광범위하게 식탁에 오른다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 주키니호박은 볶음밥이나 된장찌개, 청국장 등의 가공식품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어떤 가공식품에 해당 호박이 사용되었는지 걱정하는 국민이 대부분인데 정부는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주키니호박이 들어간 가공식품 수거를 한다거나 환불을 한다는 등의 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8년 간 GMO 주키니호박이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점 하나로 정부의 잘못된 명확한데 무엇이 두렵다고 계속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가? 정부는 검역실패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늦기 전에 명확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줄지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농민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가공식품처리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 은폐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과 국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이 들어간 모든 식품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31일
GMO반대전국행동

정부의 졸속 GMO 주키니 조사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살림의 민간 주도 가공식품 조사에서 GMO 주키니 검출 관련 입장-

G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건이 드러난 후 정부는 1주일 만에 GMO 주키니 호박과 해당 호박이 사용된 가공식품 전수조사를 마무리했고 문제가 있는 호박과 가공식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4/1 식약처 보도자료 배포). GMO 주키니 호박이 전국에 유통된 것을 감안하면 무리해서 짧은 기간에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아닌지? 해당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GMO반대전국행동 회원단체인 한살림에서 민간 주도로 가공식품 GMO 조사를 진행했고 볶음밥 4종에서 GMO 주키니 성분이 검출된 것을 4월 7일 공지했기 때문이다. 볶음밥을 제조한 가공 생산지는 주키니 호박을 원재료로 사용하던 가공 생산지이며 이미 정부로부터 GMO 검사를 받아 불검출로 판명이 났던 곳이다. 결국 정부가 GMO 주키니 조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조사 절차를 확인해보면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주키니 호박으로 품목제조보고 한 가공식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품목제조보고 작성 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애호박, 주키니 호박처럼 특정 호박을 명시하지 않고 ‘호박’이라고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키니 호박이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을 조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사안은 최대한 촘촘히 조사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 조사였다.

결국 정부가 주키니 호박이 들어간 가공식품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니라 졸속 조치였다. 이렇게 정부의 허술한 조사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국민들이 지게 되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혀 안심했던 가공생산지와 유통전문판매원 등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공신력을 믿을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은 추가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G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건 발단과 진행 경과, 조사 절차 등의 명확한 정보 공개와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가공 생산지, 유통전문판매원 등에 사과와 함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직접적인 피해자를 비롯해 국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행동을 펼칠 것이다.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하는 국민 기만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 관련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 직접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 피해를 진정성 있게 보상하라!

2023년 4월 10일

GMO반대전국행동



한살림